

트럼프 행정부, 글로벌 10% 관세 만료^{7.24}에 따른 강제노동 301조 관세 발표

2026. 7. 24.

구미동북아팀
워싱턴DC무역관

- ◆ 美 무역법 제122조 글로벌 10% 관세 만료에 따라, 美 무역대표부(USTR)는 강제노동 분야 신규 301조 관세 발표^{현지시각 7.23} (7.24일 00시 0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예정)
 -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세 그룹으로 나눠 10~12.5% 관세율 차등 부과
- ◆ 한국에는 기존 MFN 세율을 연동한 '12.5% 관세 상한제' 적용
 - ① MFN 관세 < 12.5% : MFN 관세 + 301조 관세 = 12.5% (부족분만큼 301조 관세 추가)
 - ② MFN 관세 ≥ 12.5% : MFN 관세만 부과 (301조 관세 미부과)
- ◆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301조 관세 발표도 남아 있어 추후 모니터링 필요

□ 배경

- 트럼프 행정부가 2.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*를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10% 관세가 현지시각 7.24일 00시 01분(韓 7.24일 13시 01분)에 만료 예정

* 무역법 제122조 미국 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 발생 시 대통령은 최장 150일간 최대 15%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

- 동 관세는 연방 대법원의 IEEPA(국제긴급경제권한법) 관세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^{2.20} 직후 도입되었으며, 150일간^{2.24~7.24}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임
- 미 의회의 별도 연장 조치가 없어 자동 만료될 전망

- 미국 정부는 글로벌 10%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제301조* 관세 도입 절차를 추진해 옴.

* 무역법 제301조 외국 정부의 불공정·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 미국은 해당 국가에 고율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미 무역대표부(USTR)는 ▲한국 포함 60개 경제 권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및 ▲제조업 과잉생산 분야*에 대한 301조 조사 시행을 발표(현지시각 3.11~12)
 - * (강제노동) 한국 포함 60개 경제 권역 / (제조업 과잉생산) 한국 포함 16개 경제 권역
- 현지시각 7.23일 강제노동 분야 국가별 최종 관세율이 발표되었으며,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는 현재 조사 절차 진행 중

□ USTR의 강제노동 분야 301조 최종 관세 발표 내용

- (적용) 미 동부 기준 '26.7.24. 00시 0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
 - * 단, 7.24일 00시 01분 이전에 선적되어 운송중이었고, 7.28일 00시 01분 이전에 수입 신고된 화물에는 관세 면제
 - ** 301조 관세는 별도의 종료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아(통상 4년 단위로 연장 여부 검토) USTR이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유지
 - (관세율) 조사 대상(60개 경제권)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0~12.5% 관세율 차등 부과
 - * 분류기준(경제권 수): ①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 제도를 시행·약속 부분 시행중인 경제권(17개), ② 상호무역협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(한국 포함 5개), ③ 그 밖의 모든 조사 대상 경제권(38개)으로 분류
 - 한국은 일본, 스위스와 함께 MFN 연동 '12.5% 관세 상한제' 적용
 - * MFN 12.5% 미만 품목은 301조 관세 합산 총 12.5%로, MFN 12.5% 이상 품목은 301조 관세 면제
- ① MFN 관세 < 12.5% : MFN 관세 + 301조 관세 = 12.5% (부족분만큼 301조 관세 추가)

② MFN 관세 ≥ 12.5% : MFN 관세만 부과 (301조 관세 추가 없음)

<조사 대상 경제권별 관세율>

구분	관세율	적용 방식	비고	경제권
①	10% 정액	MFN + 10%	MFN 세율과 관계없이 10% 가산	캐나다, 멕시코, 인도, 영국 등(17개)
②	10%-MFN	MFN + 301조 관세 = 10%	MFN 10% 이상이면 MFN만 부담	EU·대만(2개)
	12.5%-MFN	MFN + 301조 관세 = 12.5%	MFN 12.5% 이상이면 MFN만 부담	한국·일본·스위스 (3개)
③	12.5% 정액	MFN + 12.5%	MFN 세율과 관계없이 12.5% 가산	중국, 싱가포르 등 그 외(38개)

- (대상 품목)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
 - USTR은 관세 면제 대상 품목에 대한 기준*을 정립하고, ① 공통 관세 면제 품목, ② 경제권별 추가 면제 대상 품목을 발표(부속서)
 - * ▲관세 부과 시 국내 공급 부족이 초래될 수 있는 원자재, ▲경제 전반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, ▲미국 내 충분히 생산되기 어려운 제품 등

① 모든 경제권에 공통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

- ▲232조 품목관세 대상 품목(철강·알루미늄 등), ▲정보성 자료(출판물, 필름 등), ▲기부 물품(구호물자 등), ▲경과화물(7.24일 00시 01분 이전에 선적되어 운송중이었고, 7.28일 00시 01분 이전에 수입 신고된 화물)
- ▲첨단 전자·IT(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), ▲광물·금속 원자재(텅스텐, 금 등), ▲에너지·화학(석탄 등), ▲농림수산물(커피, 견과류 등), ▲의약품, ▲민간 항공기 등

② 특정 경제권별 추가 면제 대상 품목: 한국 미포함

- ▲영국(위스키, 의료기기 등), ▲EU(천연 코르크 등), ▲스위스(식용곤충 등) 등 13개 경제권
- 방글라데시·캄보디아·인도네시아·말레이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는 섬유·의류 TRQ 관세 할당제 가 별도로 적용
- 미국산 면화·섬유 수입실적에 비례하여 자국 섬유·의류 완제품의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TRQ를 최초 3년간 확보
- TRQ 제도 세부 시행일은 별도 고지될 예정이며, 고지 이전까지는 301조 관세(10%)가 우선 부과될 전망

□ 현지 반응

- (학계)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다양한 사법적 쟁점을 제기
 - (PIIE)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활용이 법률의 원래 취지보다 훨씬 광범위하며,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
 - * 조지타운 로스쿨 피터 해럴 교수, “301조는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협상력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, 트럼프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영구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 법을 재해석 하고 있음”
 - (CRS) USTR이 60개 경제권(미국 수입의 99% 이상)을 대상으로 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 ‘중대 문제 원칙’* 관련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
 - * 행정기관이 경제·정치적으로 매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, 의회의 명확한 법률적 권한 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미 대법원의 판례 원칙

- (언론) 사상 최대 규모 관세 조치로 평가함과 동시에, 향후 발표될 ‘제조업 과잉생산’ 분야 301조 관세도 주목
 - (NYT)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번 관세 조치가 “미국이, 나아가 그 어떤 국가가 취한 국제 노동권 관련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조치”라고 보도
 - (WSJ) 강제노동 대응이라는 행정부의 명시적 목표와 별개로, 이번 관세 조치가 연방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체제를 재구축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
 - (Bloomberg)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조사 대상에도 포함된 경제권은 추가 관세 부담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

□ 유의사항 및 향후 전망

- 관세 대상 및 면제 대상 범위가 광범위한 바, [USTR 연방 관보 자료](#) 및 [CBP 가이드라인](#)을 통한 수입품의 관세 해당 여부 확인 필요
- 추후 제조업 과잉생산(한국 포함 16개 경제권) 분야 301조 관세 발표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
 - 관련 조사는 현지시각 3.11일 개시되었으나 공청회 등 남아 있는 공식 절차를 감안 하면, 최종 관세율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

자료원: [USTR](#), [CBP](#), [PIIE](#), [CRS](#), [NYT](#), [WSJ](#), [Bloomberg](#), 등 현지 자료 종합. 끝.